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6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노종면 · 김주영
이수진 · 강득구 · 한민수
김 윤 · 최민희 · 황정아
문대림 · 문금주 · 오세희
김 현 · 박지원 · 박용갑
이재관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,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,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전단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②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 <u>년</u> 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.	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</u> <u>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임명 당</u> <u>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</u> <u>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</u> <u>3개월이 경과한 날에 그 임기</u> <u>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</u>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